

서울서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2가소74318 부당이득금반환

원 고 1. 디엔케이상사 주식회사

[Redacted]

2. 김일권 [Redacted]

충남 홍성군 [Redacted]

3. 김희선 [Redacted]

서산시 [Redacted]

4. 정기섭 [Redacted]

대전 서구 [Redacted]

5. 주옥남 [Redacted]

부산 영도구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김용호, 임수식, 진종한, 한혜진, 오대호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영진

담당변호사 문종욱, 김성건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균, 조정환

피 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

제주시 이도이동 315

관리인 이용문

소송대리인 조홍연

변 론 종 결 2013. 4. 17.





판 결 선 고 2013. 5. 22.

주 문

- 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
-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

청 구 취 지

피고는, 원고 1.에게 862,100원, 원고 2.에게 1,397,800원, 원고 3.에게 11,078,600원, 원고 4.에게 616,490원, 원고 5.에게 652,9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
이 유

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인지도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표준약관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

판사 박사랑

